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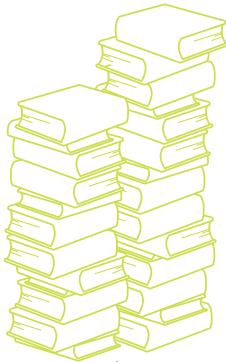
초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책을 만드신 분들

책임

최윤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사)청소년교육전략21 대표]

내용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김혁진 [청소년지원네트워크 연구원]
박현희 [서울 구일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신재호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원윤선 [(사)청소년교육전략21 보조연구원]
전민주 [(사)청소년교육전략21 간사]

만화

임동재 [만화가 · 「베이비 짱」, 「울아빠 짱」 등 다수 집필]

자문

김동윤 [(구)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
유정미 [남양주 별내중학교 사회과 교사]
이선희 [서울 양목초등학교 교감]
이영수 [(재)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기획실장]
이용정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인증팀 과장]
표종록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한승배 [용인 성지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 연구위원]
한호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교육컨설팅팀장]



차례

제 1 장	우리는 ‘저작권 가족’	04
제 2 장	영화를 찍는 우리 엄마	11
제 3 장	음악을 정말 사랑한다면?	22
제 4 장	사진을 도둑맞은 이모	33
제 5 장	함께 쓰는 아빠의 그림	44
제 6 장	내가 그린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55
• 더하기 문제풀이		67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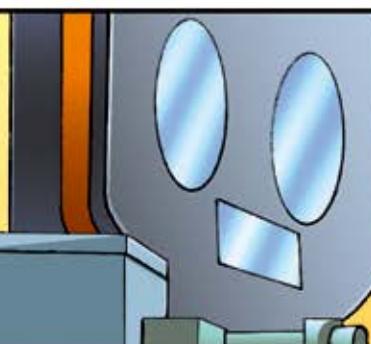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

우리는 '저작권 가족'

우리 집은 늘 시끌벅적.
오늘도 엄마는 여기저기
전화하느라 바쁘시다.



시나리오 챙기랴,
소품 챙기랴,
배우들 스케줄 맞추랴…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바쁜 우리 **엄마**는
영화 만드는 일을 하신다.



피곤한 표정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
마감 때문에
모두 잠도 못 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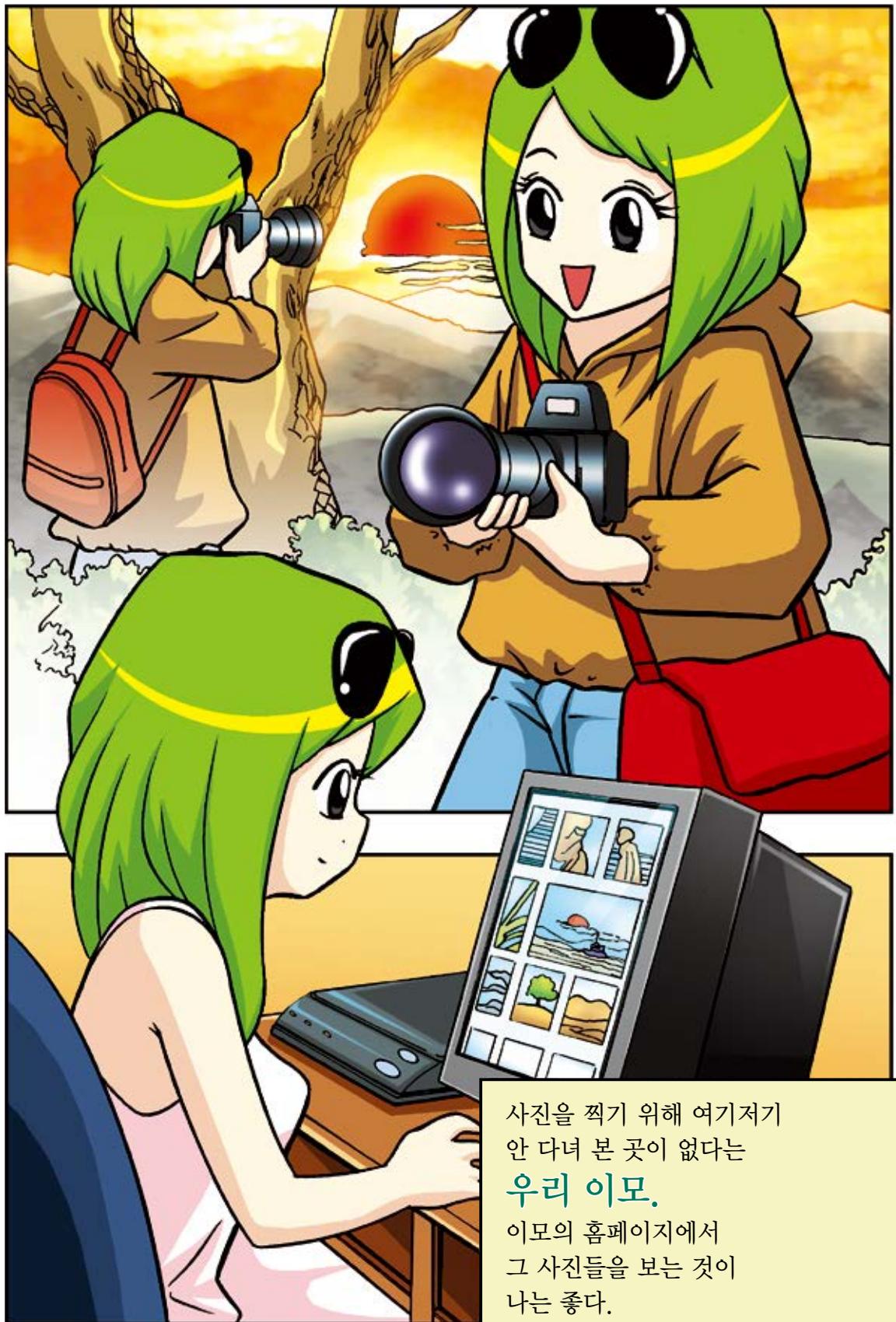


뮤직 비디오 촬영에 바쁜 이곳,
저기 보이는 사람은?



인기 짱인 가수,
우리 오빠다.





사진을 찍기 위해 여기저기
안 다녀 본 곳이 없다는
우리 이모.

이모의 홈페이지에서
그 사진들을 보는 것이
나는 좋다.

나?

나는 게임 하는 걸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만든
영화와 만화를 좋아
하는,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
5학년생!!



가끔 아옹다옹
다투기도
하지만
사이좋은
우리 오빠의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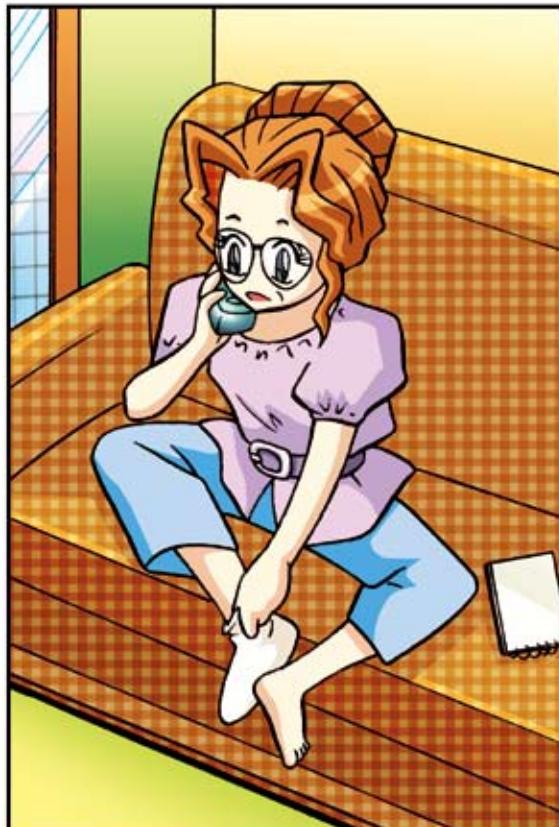
제 2 장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

영화를 찍는 우리 엄마

오늘은 늦잠을
잘 수 있는
즐거운 토요일!!!

















이번 영화에 사용하려는
음악이나 미술 작품에는
모두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 있어.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 감정 등을 보거나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물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
서 그 수고들을 지켜
준단다.

저작권
이라고요?

그래. 저작권*은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것
을 ‘나타낸’ 작품에 대해
가지는 권리, 하나의 힘
을 말하는 거야.

어떤 작품,
즉 저작물을 이용
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든 사람이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이지.

아하!

나는 내가
만든 거 다
쓰라고
할 텐데
.....

현이 너, 아까 네 숙제로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화냈잖아.

내가
그랬던가?



* 저작권(著作權) = 著(짓다) + 作(만들다) + 權(권리)

우리 친구들은 현이 엄마의 설명을 통해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니니까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말아요. 1장에서 현이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현이 가족의 이야기를 잘 읽어 보면 저작권이 무엇인지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라고 하였는데 저작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요?

저작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의 뜻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저작물¹⁾이란?

여러분은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거나 동시에 쓴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담은 감정을 글이나 그림처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한 작품을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작물이 되려면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베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만의 독창성을 갖고 창작한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물에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본 ‘해리 포터’ 시리즈와 같은 소설이나 피카소 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 작곡가와 작사가 그리고 가수가 힘들여 만든 노래, 가방에 붙이고 다니는 마시마로와 같은 캐릭터 등 그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은 어떨까요? 당연히 저작물에 포함되지요. 주인공인 현이 가족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저작물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1) 「우리들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http://1318.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 2010.05.25 검색.





저작권²⁾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의 뜻에 대해서는 혜이 엄마가 설명을 해 주셨지요? 간단히 정리하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거나 돈을 내야 할 때도 있어요. 소설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내는 돈에는 모두 저작자에게 주는 돈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제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저작물과 저작권을 확인해 볼까요? 다음 표에서 왼쪽의 저작물을 잘 읽고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 찾아 보세요.

저작물 상황		저작권 주인	
1 친구가 찍어준 내 사진	나	내 친구	
2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2,000원 내고 가입한 후 다운 받은 영화	나	인터넷 공유 사이트 주인	영화 제작자 (작가, 감독, 배우, 투자가 등)
3 내가 산 정품 음악 CD	나	음악 만드는 사람들 (작사가, 작곡가, 가수, 연주자, 제작자 등)	
4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고 내가 쓴 글짓기 숙제	나	다른 사람	
5 내가 스캔 한 만화책	나	만화 제작자 (만화가, 만화회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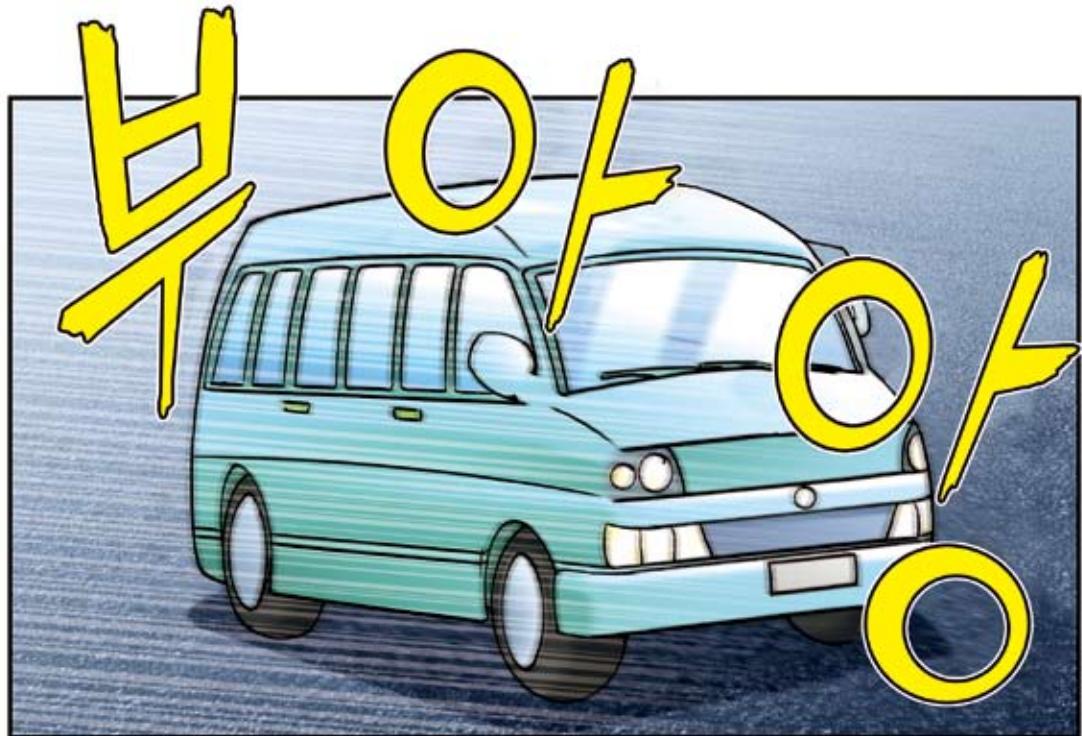
2) 임원선, 「교사를 위한 저작권」, 저작권위원회, 2003, 18~25쪽.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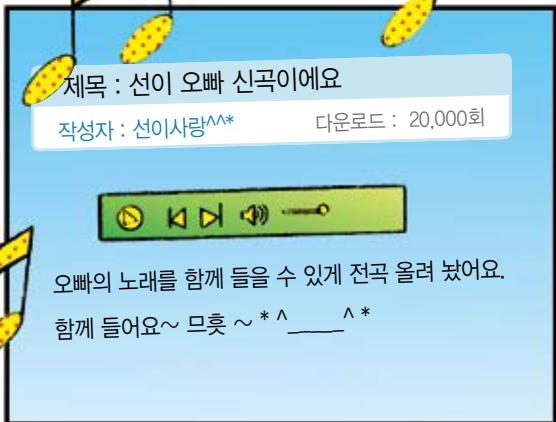
음악을 정말 사랑한다면?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













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냥 다운
받으면……



그동안 일해 온
사람들은
월급도 못 받고,



계다가
앞으로 노래를 만들 때 필요한
소품이나 기계들도 못 사서,
음악을 만들기가 어려워져.
음반이 많이 팔려야 다음 음반
을 낼 수 있는데 말이야.





날 진짜 사랑한다면,
내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면,
음악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해.
이렇게 불법 복제물을 올리고 다운 받아서
쉽게 듣는 것은 만든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어.



제 목

부탁의 글

글쓴이

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선이에요.

1년 간의 공백을 뒤로 하고 돌아온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 곡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곡을 무료로 다운받게끔 올려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제 노래를 같이 듣고 싶어서 올려 놓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공유를 한다면 저의 노래를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노래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많은 사람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이의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선이 오빠의 직업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선이 오빠가 많은 돈을 들여 어렵게 만든 노래를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올려놓는 바람에 너무 큰 피해를 입었네요.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저작권 침해’라고 불러요. 선이 오빠의 음악을 퍼뜨린 누리꾼들처럼 불법 복제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그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해요. 다음의 글을 보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지켜 주지 않고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법 복제로 인한 산업 피해 ‘심각한 수준’³⁾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보통의 상품에 대한 권리와 똑같다. 주인 몰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진열대의 CD나 DVD를 훔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음악 파일이나 영화 파일을 마음대로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 상의 ‘콘텐츠=공짜’라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난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영화·음악·게임의 불법 복제 금액은 약 4조 4000억 원대이며, 이로 인해 매출 감소액이 5조 5000억 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6만여 명에 달한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심코 하는 ‘클릭’으로 인해 최근 3년간 3400여 개의 비디오 대여점과 감상실이 문을 닫았으며, ‘밀리언 셀러 음반’이라는 말은 이제 사전에서만 볼 수 있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3) 조창희, 「저작권 보호,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할 때」,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 2007. 8. 30. 검색.

내 주변에서의 저작권 침해
인향 피해 상상해 봄니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혹시 내가 했던 일들 중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지켜 주지 못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서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상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 보고 다음의 빈칸에 그 내용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 명이 사용한다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히게 될지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서 손해 예상액은 저작권을 잘 지켜 주었다면 반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예상액이 되겠지요.

저작물의 무단 이용 상황	예상 이용 범위	기준 금액	예상되는 손해액
예) 재미있게 읽은 만화책 '궁' 17권을 친구들과 보기 위해 스캔해서 카페에 올렸다.	50명	3,000원	150,000원



제 4 장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

사진을 도둑맞은 이모



















그리고 사진 밑에 내 허락을 받고 사용해 달라는 문구도 써 놓고…….



저작권 침해? 이거이 끔금하다.*

양성당 쌩 쌩 키~증 (4,5)

자~~~ 지금까지 저작권과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에서 배웠듯이, 저작권 침해란 저작자의 권리(저작권)를 무시하고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저작권법’인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이 법에 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럼 이제부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은 무엇인지 O · X로 표시하면서 생각해보도록 해요.



- 1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 2 홈페이지의 자료를 긁어 붙여 과제물로 제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 3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퍼 왔다. 이 글을 내가 가입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
- 4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도 어디서 가져 왔는지를 표시했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 5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행어, 말투, 동작 등을 친구 앞에서 따라 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
- 6 MP3 음악 한 곡당 500원씩 내고 구입하는 것은 괜찮다. ()
- 7 사진 이용에 대해 말로만 허락받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
- 8 나 혼자만 보기 위해 내 블로그에 영화나 음악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 9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을 구입해서 가족, 친구에게 빌려 준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 10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누리꾼들이 남긴 글들을 내 홈페이지에 가져와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정답은 67쪽에)



- 4) 한국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교실 홈페이지, <http://1318.copyright.or.kr>, 2010.5.25 검색.
- 5)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counsel.copyright.or.kr>, 2010.5.25 검색.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때부터 자동으로 생기고, 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저작권에 대한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내가 만든 저작물을 널리 알릴 수 있다면 좋겠지요? 이런 경우를 위해 ‘저작권 등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내가 만든 저작물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공공의 제도랍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캐릭터를 베꼈거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때 나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둘리’와 같은 캐릭터 이름들은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뿌까 인형’과 같이 캐릭터와 물건이 합쳐진 경우에는, 디자인을 등록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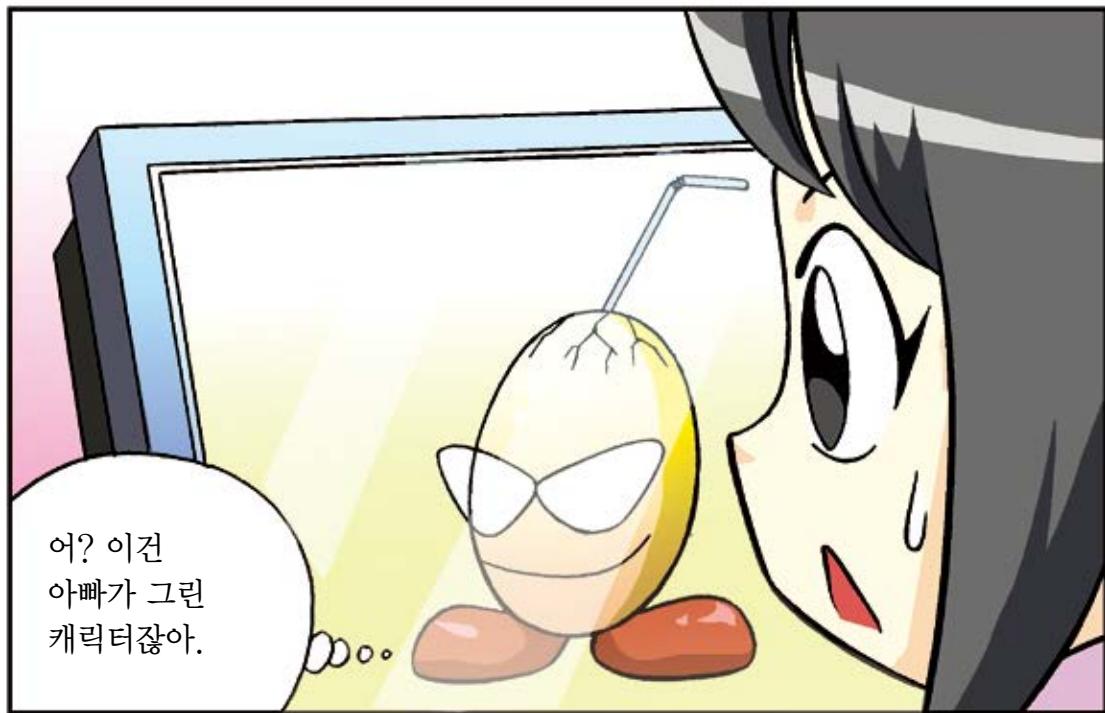


제 5 장

함께 쓰는 아빠의 그림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⁶⁾

라이선스 유형		내용	
배너	정보  라이선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 표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허용'을 따른다.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음.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가 가능함.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수 있음. 편집 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할 수 있음.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음.
기호		영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영리 목적의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
		개작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적 저작물 작성만 금지하고 나머지 저작물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이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예: 소설 '나비 부인'을 오페라로 만드는 것.)
		영리 금지· 개작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가장 좁음. 영리 목적의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 행위는 허용.
		이용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6) 정보공유연대IPLeft(정보공유라이선스), <http://www.freeuse.or.kr>,
2010. 5. 25 검색.



● 왜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터넷에 소설을 써서 올려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 친구의 글을 허락없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설을 쓴 우리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락을 따로 받지 않아도 마음대로 소설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알리면 좋겠지요. 그래서 만든 표시가 정보공유라이선스예요. 이용자들이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미리 정해 표시해 놓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요.



●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먼저 내가 만든 작품을 정말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지 확실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용을 허락하고 싶은 범위에 맞는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를 선택해 작품을 공개할 때 함께 표시하지요. 그러면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내용을 보고, 그것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음 놓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 금지'라는 표시가 있으면 어떡해야 할까요? 저작권자는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외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표시가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 배포, 전송, 방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이용할 때에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대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을 임의로 바꾸는 것도 금지되어 있답니다.



7) 정보공유연대IPLeft(정보공유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소개-정보공유라이선스란」, <http://www.freeuse.or.kr>, 2010. 5. 25 검색.

아래 왼쪽의 표시가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이지요. 이 표시와 오른쪽의 설명을 맞게 연결해 보세요.



- 영리 목적의 이용과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음.
-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가능함.



- 2차적저작물 작성만 금지하고 나머지 저작물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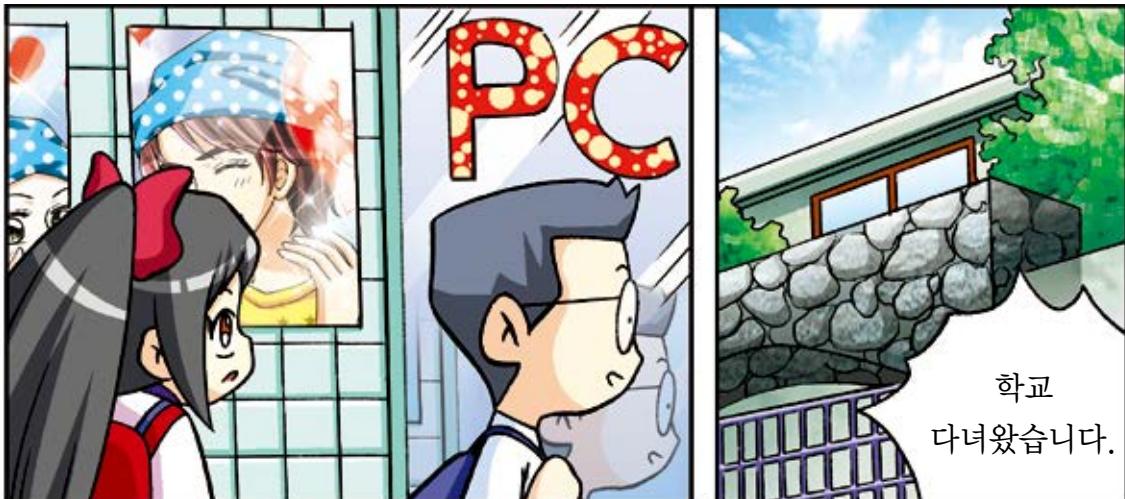


(정답은 69쪽에)

제 6 장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

내가 그린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친구야!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가수? 사진작가? 영화감독? 의사?
무엇이 되든지 우리는 지금처럼 여러
사람이 만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겠지.
그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보호해 주겠지?
우리 가족을 통해 알게 된 저작권에
대해 늘 잊지 말고 함께 지켜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저작물이 많은 사람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현이가—



우리 친구들은 현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저작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저작권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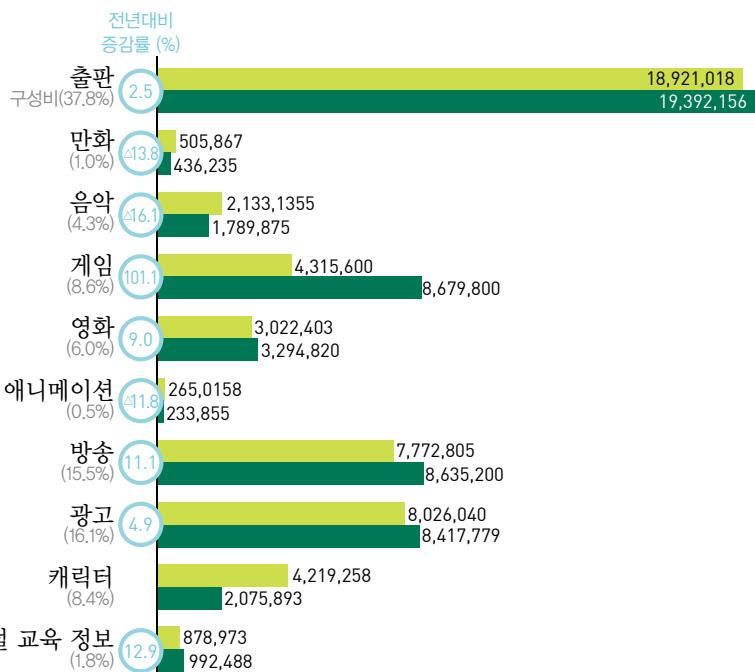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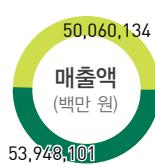
우리가 읽는 소설이나 만화,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애니메이션, 컴퓨터 앞에 우리를 불들어 두는 게임과 가방이나 공책에 붙어 있는 캐릭터와 같은 저작물을 문화 상품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을 팔아서 얼마 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알고 있나요?

2005년도에 이러한 상품 중 열 가지의 판매액을 합쳐 보니까 자그만치 53조 9000억 원이나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도 있네요. 문화 상품의 수출액(12억 3600만 달러) 보다 수입액(29억 8600만 달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훌륭한 저작자들이 되어서 미국이나 일본에 캐릭터, 소설, 영화, 만화를 수출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더욱 더 발전하겠지요? 꼭 유명한 예술가가 되어야만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창작을 할 수 있답니다.

2005년도 저작권 사업 매출액

53조 9481억 원
작년도 대비 7.8% 증가

2004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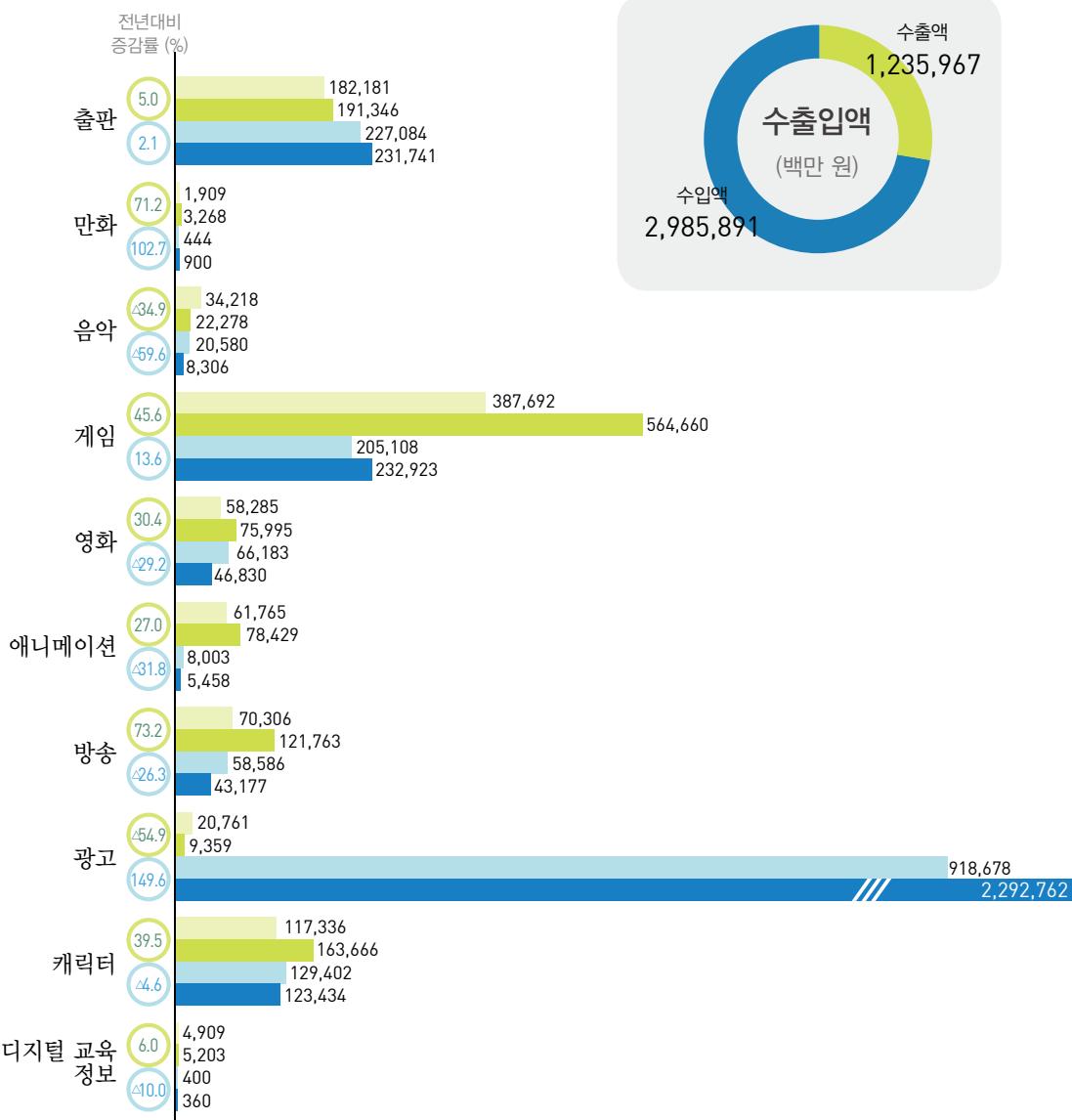


8)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6 문화산업통계(2005년 기준)」, 2006.



2005년도 저작권 사업 수출입액

수출액 — [2004
2005]
수입액 — [2004
2005]



2장

- 내 친구** 내가 가지고 있고, 나를 찍은 사진이지만, 내가 찍은 것은 아니지요? 저작권의 주인은 바로 사진을 찍은 친구예요.
- 영화 제작자**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용도 내 마음? 이 경우에는 돈을 냈어도 이용에 정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아닌 공유 사이트 주인에게 돈을 냈으니까요. 공유 사이트 주인이 영화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 음악 만드는 사람들** 내가 돈 주고 산 CD가 내 것이긴 하지만, 나는 작곡도, 작사도, 편곡도, 연주도, 돈을 주어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의 주인은 아니겠지요?
- 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일부 인용 했지만 내 생각을 표현한 글이라면 이 창작물의 주인은 바로 나!
- 만화 제작자** 내가 스캔 받아 새로 만든 수고는 있겠지만, 그 만화책을 원래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만화 제작자가 만화책의 원래 저작권자이지요.

4장

-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해서 홈페이지와 같이 공개된 곳에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노래가 한 곡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작사가와 작곡가, 편곡가, 연주자 그리고 가수가 필요하고, 그 음반을 만들어 내는 제작자가 많은 수고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노래의 저작권, 저작인접권⁹⁾을 가지고 있으며, 이 노래를 이용하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 파일을 웹사이트, 미니홈피, 블로그, 게시판이나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린다면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따라서 홈페이지 같은 곳에 노래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에 올려진 많은 자료는 대부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들입니다. 숙제를 위한 관련 자료는 찾아서 참고해도 되지만,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안 되며 또한 관련 자료의 출처를 꼭 밝혀야 합니다.

9)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 :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가 가지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



3. ○ 자신이 직접 쓴 글을 올리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하지만 남이 쓴 글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미리 얻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퍼온 글’이라는 말이 있죠? 그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통 어디서 ‘퍼 왔다’라는 표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자료라는 것, 즉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출처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처를 표시하는 것 말고도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출처를 밝힌다고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5. ✗ 유행어는 경우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비영리적으로 따라 하는 것(일종의 공연)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말투나 동작은 저작물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따라 해도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유행어, 말투, 동작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¹⁰⁾을 침해할 수 있지요. 이 경우에도 비영리적이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때에는 대체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6. ○ 현재 온라인 상에는 정당한 이용 허락 절차를 거쳐 핸드폰이나 MP3에 유료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7. ○ 말로 하는(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8. ✗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음악이나 영화를 올리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10)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영화 배우, 탤런트, 운동 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9. 판매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소유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대여권).
10. 누리꾼들의 글이라 하여도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고 표현하여 남들과 구별되는 것이라면 충분히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허락 없이 올리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5장



• 영리 목적의 이용과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음.
•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가능함.



• 2차적저작물 작성만 금지하고 나머지 저작물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에
우





에 ♡



초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현 이네는 ‘저작권 가족’

인쇄일	2010년 05월 27일
발행일	2010년 05월 31일
발행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6~7층) (02)2669-0000 www.copyright.or.kr
연구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983-41 구미빌딩4층 (02)3472-0924 www.yes21.org
제작	(주)계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01 (02)725-5216



이 책의 내용은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청소년저작권교실(<http://1318.copyrigh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